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 이유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정('99년) 이후 외환거래수요가 양적·질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, 엄격한 제재규정, 복잡한 거래절차 등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 경제성장 및 환경 변화에 맞추어 국민·기업·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대통령령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1) 「외국환거래법」 상 거래절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 및 형벌적용 기준(예: 형벌적용 기준 거래금액) 완화
- 2) 외환제도 운영, 법령해석·적용에 대한 업계·학계·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‘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’ 신설
- 3) 법률에 명시된 규제사항인 ‘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’에 앞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 신설
- 4) 외환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 완화,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증권금융회사의 스왑시장 참여 허용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 2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이전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협의 또는 사전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
제18조 제4항 4호의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”를 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”로 한다.

제33조 제1항 4호의 “미화 2만달러”를 “미화 5만달러”로 한다.

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.
 1. 「외국환거래법」 및 이와 관련되는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
 2. 기존의 「외국환거래법」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외국환거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
 3. 그 밖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으로 하고,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
 2. 금융위원회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 3. 관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 4.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사람
 5.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 6. 그 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
제40조 제1항 제1호의 “25억원”을 “50억원”으로, 제2호의 “10억원”을 “20억원”으로 한다

제41조 [별표4] 과태료 부과기준의 2. 개별기준에서 금액 “70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외국환거래의 정지 등) <u><신 설></u>	제11조(외국환거래의 정지 등)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이전에 거래 당사자에 대한 협의 또는 사전권고 등을 할 수 있다.
제18조(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)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한국은행 2. 정부(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·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3.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5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6. 외국 금융기관(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제외한다)	제18조(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) ④ ----- -----.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. ----- 6. ----- -----

제33조(행정처분) ① 법 제19조 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4. 법 제18조 위반: 미화 2만달러 <u><신 설></u>	제33조(행정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4. 법 제18조 위반: <u>미화 5만달러</u> 제39조(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<u>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 <u>심의위원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. 1. 「외국환거래법」 및 이와 관련되는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2. 기존의 「외국환거래법」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외국환거래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3. 그 밖에 「외국환거래법」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--	--

③ 심의회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
부 국제금융국장으로 하고, 심
의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
사람으로 한다.

1. 기획재정부의 3급 또는 4급
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
사람
2. 금융위원회의 3급 또는 4급
공무원 중 금융위원장이 추천
하는 사람
3. 관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
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
사람
5.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6. 그 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
자격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
위촉하는 사람

④ 그 밖에 심의회위원회 운영 등에
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
정한다.

제40조(벌칙 등) ① 법 제29조
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금액”이란 다음 각 호의

제40조(벌칙 등) ① -----

금액을 말한다.

1.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: 25억원
2.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: 10억원

[별표4] 과태료 부과기준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조 문	금액
너.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	법 제32조 제4항 제4호	<u>700만원</u>

-----.

1.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: 50억원
2.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: 20억원

[별표4] 과태료 부과기준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조 문	금액
너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	법 제32조 제4항 제4호	<u>200만원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753